

원유가 인상돼야 한다

지 도 부

1. 원유가 인상요청 배경

우리나라 낙농업은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향상과 식생활 소비패턴의 고급화에 힘입어 장족의 발전을 가져왔고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높아가고 있다.

불과 20여년 남짓한 일천한 낙농역사에도 불구하고 젖소 사육두수, 원유 생산량 및 소비량, 그리고 우유처리 시설의 증설등에 있어 실로 괄목 할만한 성장을 가져왔고, 이러한 성장을 가져오기까지는 정부의 적극적인 진흥정책과 낙농가들의 꾸준한 경영개선 의지에 힘입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수급불균형의 주기적인 반복과 소값 파동, 나아가 수입개방화 추세에 편승한 낙농육우산업 전반의 침체된 분위기로 낙농은 일대 전환의 귀로에 봉착해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단적인 예로 84년 하반기 이후 계속된 낙농불황으로 목장경영이 어려워지자 그간 증가추세의 낙농가 수가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냄으로써 낙농의 어려움을 여실히 반증하고 있다. 낙농에 땀흘려 소득을 올리겠다는 집념의 농가들이 84년말부터 88년 6월까지 2년 6개월 사이에 무려 6,903호(15.8%)의 낙농가가 생업을 포기했다.

85년 5월 1일에 조정된 현행 원유가는 3년이 넘는 현재까지 동결됨으로써 낙농가의 어려움을 극도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현행 원유가격 제도는 행정가격으로 낙농가들의 인상요청이 없이는 실제 생산비를 근거로 한 가격사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생산비 조서를 통한 가격인상을 생산자 중심으로

당국에 건의하여 반영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목별 인상요인을 통한

원유 생산비 산출을 통해 적정가격이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1. 원유가격동향

'77	1.1~12.31	150	乳脂肪 3.4%基準 0.1%當 3원 加減
'78	1.1~79.1.31	167	乳脂肪 3.4%基準 0.1%當 5원 加減
'79	2.1~79.12.10	209	乳脂肪 3.4%基準 0.1%當 6원 加減
'79	12.11~80.2.1	249	乳脂肪 3.4%基準 0.1%當 7.30원 加減
'80	2.2~81.5.31	266	乳脂肪 3.4%基準 0.1%當 7.80원 加減
'81	6.1~82.3.31	307	乳脂肪 3.4%基準 0.1%當 7.80원 加減
'82	4.1~85.4.30	313	乳脂肪 3.4%基準 0.1%當 7.80원 加減
'85	5.1~현재	322	乳脂肪 3.4%基準 0.1%當 9.40원 加減

2. 원유가격 인상요인

현행 원유가는 유지율 3.4% 기준 kg 당 322원으로 85년 5월 1일부터 조정되었다. 인상전 kg당 313원 가격은 82년 4월부터 적용되어 왔으나 생산비 조사를 위해 한국낙농우협회와 서울우유협동조합이 공동용역으로 낙농업의 경영실태 조사분석사업을 한국농업경제학회에 의뢰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가격인상을 관계요로에 건의하고 활동하여 그나마 인상시킬 수 있었다. 현행 가격으로 책정된 이후 낙농경영 악화를 반영하여 낙농가수가 줄어들고 젖소 사육두수 증가율이 둔화되는 주된 원인은 양축가들의 낙농에 대한 실의와 포기심리가 팽배하여 생업에 대한 불안감이 누적된 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313원에서 322원으로 2.9%가 인상되었다고 하나 그후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낙농가의 실질소득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추세로 낙농가 수

의 감소에서 오는 낙농기반의 붕괴는 장기적인 원유 공급차질의 심각한 우려현상이 아닐 수 없다.

표2. 낙농가수 감소현황

구분	'85	'86	'87	'88.6	비고
농가수(호)	43,760	42,728	38,131	36,857	연말기준
지수	100.0	97.6	87.1	84.2	농가수

〈표3〉 젖소 사육두수 증가동향

구분	'82	'83	'84	'85	'86	'87	비고
사육두수(두)	228,248	274,783	334,352	390,135	437,333	466,330	85년 이후 증가율둔화
전년대비 증가율(%)	17.5	20.4	21.7	16.7	12.1	5.9	

85년을 기준으로 한 각종 물가지수 변동요인을 보면 낙농의 경우 원유가 고정으로 변

화가 없는데 비해 여타 부분의 경우 비교표에서 나타난 대로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목별로 물가변동을 반영한 인상요인은 다음과 같다.



표4. 연도별 각종 물가지수 비교표

구 분	'85	'86	'87	'88.7
농가판매우유	100.0	101.6	101.6	101.6
농가 판매 쌀	100.0	107.7	111.9	123.0
연탄(서울)	100.0	106.0	111.5	117.9
농가구입 종자류	100.0	108.1	110.1	127.9
농업노동임금	100.0	104.6	109.8	131.2
농가판매총지수	100.0	97.8	102.6	117.7
농가구입총지수	100.0	99.4	101.1	109.6
전도시소비자 물가총지수	100.0	102.8	105.9	113.9

가. 배합사료 가격인상

쇠고기 수입 등 소 사육농가들의 불안감이 고조되어 있는 시점에서 7월 전후하여 배합사료 가격이 인상조정되어 판매되고 있다. 미국의 한발로 인한 국제곡물가의 상승과 대두박을 비롯한 부원료 가격 상승이 주된 인상요인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원유생산비 인상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생산비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농후사료비 즉 배합사료 가격의 연상은 8.9%에 이르러 있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나. 농촌임료금의 인상

농촌임료금 인상과 관련 공식적인 통계와 실제 농촌임료금은 상당한 괴리 현상이 있음이 발견되고 있다. 농가에서 실제로 지불되는 임료금보다 공식통계에서 제시되는 금액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농촌임료금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과 농가 월평균소득을 합산 평균한 가격으로 적용함으로써 다소 현실성을 반영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에서 발표한 87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11,000원과 농가 월평균소득 544,000원을 임료금과 대비한 임금 인상률은 무려 100%를 초과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임으로 작용하는 목부급료는 농촌 젊은 세대의 도시진출이 가속화되면서 큰 폭으로 계속 오르고 있다. 목부 구득난이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가 하면 85년 5월 기준 293,000원의 목부 월급이 88년 8월기준 450,000원에 달하고 있다.

다. 젖소 수명의 단축

낙농경영 향상의 가장 큰 과제인 젖소 능력개량은 특히 우리나라 낙농업 발달에 있어

앞으로 계속 추구되어야 할 목표가 아닐 수 없다. 젓소 도입에 따른 선천적 능력 계발과 향상을 위해 두당 산유량 증대를 위한 개량 노력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젓소 수명이 짧아지고 있다.

〈표 5〉 산유량 증가추세

구 분	'75	'80	'85	'86	'87	비 고
305일산유량 (kg)	4,146	4,481	4,681	4,724	4,834	축협중앙회 '87자료:4,983kg

자료: 농림수산부

따라서 낙농심의위원회가 적용하는 젓소 내 용년수는 6년에서 4년으로 적용되어야만 농가 실태를 반영하는 산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 도태두수의 증가

젓소 사육두수 증가율의 둔화는 도태두수가 늘어나는 현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 낙농경영 악화로 도태현상이 늘고 있다.

표6. 젓소 암소 도태 실적

(단위: 천두, %)

구 분	'85	'86	'87	'88.7	비고
연초성빈두수	195.3	230.6	248.9	266.5	
도 태 두 수	36.9	51.7	65.3	(50.1)	
도 태 율 (7월 현재)	18.9 (10.3)	22.4 (13.8)	26.2 (15.5)	(21.4)	

자료: 농림수산부



도태두수의 급증은 낙농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일면을 엿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채산성이 그만큼 낮으므로 낙농에 대한 불안감에서 가능한한 저능력우로 판단되는 젓소를 도살처분하는 현상으로 낙농의 어려움을 입증하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 기타

교통통신비, 종부료, 지대 자본이자의 인상 등 물가상승과 관련한 비목별 인상의 요인의 작용을 들 수 있다.

3. 원유가 인상내역

제반 비목별 인상요인을 고려한 현행 원유가의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중 휴무없이 생명을 가진 젓소와 함께 생활하면서 흘린 땀의 댓가가 보장되는 적정 원유가가 산정됨으로써 생업안정을 통한 낙농가의 소득보장은 물론 장기적인 낙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하리라 본다. 비목별 변동요인을 고려하여 산출된 원유 생산비조서는 표와 같다.

표7) 원 유 생산 비 조 서

(낙농심의 위원회 산출기준)

항 목	구 분	1985. 5	증감율 (%)	1988. 9	산 출 근 기	
생	농 후 사 료 비	112.91	-9.5	102.18	• 착유사료기준(186.60원/kg→168.77원/kg) : -9.5%	
	조 사 료 비	96.34	72.0	165.75	• 농촌임료금(9,582→19,250) : 100.9% • 농가구입 비료지수(86.3) • 도매물가 석유 및 석탄지수 : 59.4 • 도매물가 작물평가지수 : 111.9 * 조사료비 구성비율 : 농촌임료금 68.8% 농가구입 비료지수 15.5% 도매물가 유류지수 6.5% 도매물가 기타지수 9.2%	
	고 용 노 임 가 축 비	77.94	55.2	120.96	• 목부월급(55.2%)	
		31.84	18.1	37.60	• 초산우 가격기준(1,692,000원-1,692,000원×0.6)/4/4,500kg	
	건물 및 대농구 상각비	5.22	1.0	5.27	• 농가구입 농기구류지수(104.4)	
	건물 및 대농구 수리비	5.03	1.0	5.08	• 농가구입 자재류지수(100.5) * 건물 및 대농구 상각비, 수리비 구성비율 : 농가구입 농기구류지수 13% 농가구입 자재류지수 87%	
	수 도 광 열 비	5.70	0.5	5.72	• 농가구입 가계광열지수(100.5)	
	소 농 구 비	0.80	4.4	0.83	• 농가구입 농기구류지수(104.4)	
	교 통 통 신 비	1.29	10.9	1.43	• 전도시 소비자물가 교통비지수(110.9)	
	중 부 료 비	3.34	30.0	4.34	• 중부료(10,000원→13,000원 : 30%)	
	위 생 치 료 비	6.23	3.9	6.47	• 도매물가 의약품지수(103.9 : 전도시 소비자물가 의약품지수 적용)	
	비	지 대 (임 대)	1.16	17.7	1.37	• 농가판매 총지수(117.2)
		냉 각 기 전 기 료	2.33	-2.5	2.27	• 전도시 소비자물가 전기료지수(97.5)
제 재 료 비		0.80	0.5	0.80	• 농가구입 자재류지수(100.4)	
잡		2.05	8.4	2.22	• 전도시 소비자물가 잡비지수(108.4)	
합 계		404.99	26.3	533.51		
수	송 아 지 생 산 수 입	104.64	-28.1	75.23	• (♂462,000+♀423,000)/2×0.85×0.85×0.9/4,500kg	
	입 기 타 수 입	4.00	-	4.00	• 현행거치	
차	인 생 산 비	296.35	-	454.28		
	산 량 (kg)	4,500	-	4,500		
	우 유 1kg 당 생 산 비	296	53.4	454	• 4,500kg	
현 행 乳 價	322	24.5	401	• 5,100kg('88.7월 농림수산부 추정자료)		
(유지율 3.4% 기준)						

주)• 자 료 : 한국은행통계월보 '88. 7월호, 농협조사월보 '88. 8월보, 축협중앙회축산물가격 및 유통동향, 축협 조사계보

- 기준지수 : '85지수 100을 기준함.
- 배합사료 가격은 최근 8.5% 인상을 적용 수치임.
- 농촌임료금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611,000원)과 농가월평균 소득(544,000원)을 적용, 조사료비와 자가노임에 반영하였음.
- 고용노임은 목부월급('85. 5 : 290,000원→'88. 8 : 450,000원)을 기준으로 반영하였음.